

문서번호 : KARA-2021265

시행일자 : 2021. 10. 08

제 목 :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의 건.

1. 우리 협회는 지난 9월 5일(일), 인제스피디움에서 개최된 '2021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라운드' 삼성화재 6000 클래스 결승 1랩 턴8 지점에서 발생한 #95번과 #08번 간의 접촉 사고에 대하여 'KARA 항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KARA 항소위원회

- ① 운영기간: 2021년 10월 1일 ~ 10월 7일
- ② 장 소: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회의실
- ③ 위 원 회: 황태영 위원장, 윤철수 위원, 장성국 위원

2) KARA 항소위원회 심의 안건

삼성화재 6000 클래스 결승 1랩 턴8 지점에서 #95번과 #08번 간의 접촉 사고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Racing accident 결정'에 대한 건

3) KARA 항소위원회 심의 결정

- ①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결정문 참고

4) 첨부 파일: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결정문. 끝.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2021년 제1호)

결정

항소자: 김재현 (불가스 모터스포츠)

대상자: 대회 심사위원회, #08번 참가자

주문

본 위원회는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슈퍼6000 클래스에 참가한 #95 김재현의 항소를 부분 인정하여 #08번에 경고 벌칙을 부여한다.

이유

1. 항소 신청자의 지위

항소자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드라이버 라이선스 국제C를 소지한 회원이다.

2. 해당 대회 심사위원회의 당시 결정

해당 대회 심사위원회는 2021년 9월 5일 인제 스피디움 턴8 지점에서 발생한 #95번과 #08번간의 접촉 사고에 대해 대회특별규정 제1장 39조에 의거한 심의를 통해 경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Race Accident)로 판정하였다. 해당 건은 대한자동차경주협회 2021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 제2장 국내스포츠규정 제11.3조에 의하면 필수적으로 관련 당사자를 소환해야 하는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적용 기준

본 항소위원회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 2021 자동차경기 국내규정집 제2장 국내스포츠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항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본 항소위원회는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대회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항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심사위원장과 해당 드라이버 소속팀 감독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4. 판단

항소자는 해당 경기 당일 결승 레이스 잠정결과 발표 후 항의 접수가 받아들여 지지 않은 데 따른 절차상 문제와, 당시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 등 크게 두 가지 사안으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본 항소위원회는 항의 절차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해당 건은 심사위원회에 의해 심의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대회특별규정 1장 44조에 의거한 항의의 제한은 규정에 부합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경기 잠정결과지에는 심의 대상 드라이버의 엔트리 넘버가 기재되지 않아 항소자에게 항의 가능한 미심의 사건으로 오인할 여지를 주었으며 이는 부분적인 항의 권리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였다.

또 항소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심사위원 서명 및 접수 시각 등이 누락되어 있어 항소에 필요한 적법한 서류가 미비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서류의 미비는 항소자의 귀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 신청을 인정하였다.

해당 사고에 대해 고의성 없는 단순 사고로 판정한 해당 경기 심사위원 3인의 합의는 존중되어 마땅하다. 현장에서의 빠른 판단을 통해 시청자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의를 확정하고자 하는 심사위원회의 취지는 공감 받을 만하다.

다만 순위가 변동되었던 사고임에도 관련 드라이버 의견 청취 없이 CCTV 영상자료만을 근거로 판정이 이루어져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항소자의 호소에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당시 심사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검토하였다면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위원회는 관련자 의견 청취와 당시 심사위원회가 시간상 확보하지 못한 추가 영상 자료 및 사고 차량의 사진 자료를 추가 확인한 결과, #95번이 주행 라인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08의 고의성 없는 과실로 순위가 밀린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본 위원회는 대회특별규정 1장 39조를 근거로 당시 사고에 대한 #08번의 과실을

인정하여 경고 처분을 결정한다.

경고 벌칙은 동 대회 2021년 1라운드 심사위원회 판정 등 유사 판례를 참고하여 결정되었다.

본 항소위원회는 항소자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이며, 관련 행정 비용을 제외한 항소 보증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다.

2021년 10월 7일

(사)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

위원장 황태영



위 원 윤철수



위 원 장성국

